



보조 메디케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보장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면, 즉시 메디케어 신청을 할 것인지 등록을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을 통한 의료 보험은 특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을 알면 귀하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IRS 규칙에 따라 현재 일을 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직장 그룹 의료 보험 또는 퇴직 패키지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cahealthadvocates.org 에 있는 “퇴직 플랜” 또는 “메디케어와 기타 다른 의료 보험”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일 귀하가 말기 신장 질환(ESRD)으로 알려진 영구적인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다면, cahealthadvocates.org 에 있는 ESRD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 많은 규칙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음**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자료에는 두 가지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이어서 메디케어에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며 직장 그룹 의료 보험 플랜(GHP)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65세 이전에 장애로 인해 (ESRD 가 아닌)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 중 한명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며 대형 의료 보험 플랜(LGHP)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주의: 동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메디케어가 없는 부양 가족이,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그룹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사회 보장국(SSA)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ssa.gov 을 방문하시거나 1-800-772-1213로 전화하세요.

65세 이상에 대한 직장 보험

본인이나 배우자가 20명 이상 직원이 있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65세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고용주는 귀하를 다른 직원과 동일한 의료 보험에 가입 시켜 주어야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6-04-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합니다. 이를 그룹 의료 보험 플랜(GHP)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귀하에게 일차 보험(즉, 일차 보험이 먼저 지불하고 메디케어는 다음에 지불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메디케어 또는 보조 메디케어 혜택과 같은 이차 보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장 그룹 의료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치과 보험, 안과 보험 및 보청기 보험 등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포함하여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0 명 이하인 경우, 만일 귀하가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면 고용주는 귀하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보통 고용인을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귀하에게 메디케어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귀하가 동의한다면 메디갭 보험과 같이 작용하는 이차 또는 보조 보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이 보험은 일차 보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메디케어를 가진 65세 이하에 대한 직장 보험

65세 이전에 장애로 인해 (ESRD 가 아닌)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 중 한명이 직원이 100 이상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다른 직원과 직원의 배우자 그리고 부양 가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같은 보험을 귀하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대형 의료 보험 플랜 (LGHP) 이라 합니다. 100 이하의 직원이 있는 직장인 경우, 반드시 위의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보조 보험을 제공 할 수는 있습니다.

파트 B, 파트 D 그리고 직장 보험에 대한 등록의 연기

직원 수와 상관 없이, 직장 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 그리고 또는 파트 D에 대한 등록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인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한 등록을 연기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해 왔고, 40분기의 사회 보장 크레딧을 받았다면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cahealthadvocates.org 에 있는 “메디케어: 개요” 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파트 B 에 대한 등록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B에 대한 등록 연기 권리는 직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주의: 만일 65세 미만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대형 그룹 의료 보험 플랜 (LGHP) 에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6-04-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다른 혜택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근로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사회 보장국 웹 사이트 ssa.gov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등록을, 그 자격이 주어진 때 연기하였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또는 가족 구성원)가 직장을 그만 둔 때, 또는 GHP 또는 LGHP의 적용이 중지된 때를 비교하여 더 빠른 것을 기점으로 8개월 이내에 파트 B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8개월이라는 기간은 특별 등록 기간 (SEP)으로 불리웁니다. 만일 SEP 중에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을 하시면, 제 기간에 등록 하지 못하는데 따른 벌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SEP 중에 등록 하지 않으시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 다음 일반 등록 기간 (GEP)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GEP중에 등록 하시면, 등록 하신 그 해 7월 1일까지는 메디케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파트 B 혜택을 받고 있는 한,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하는데, 이 보험료에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이 가산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는 처방약에 대한 혜택입니다. 만일, 이 보험에 대한 자격이 주어질 당시, 직장 GHP나 LGHP가 “양호한 보험”(즉, 스탠다드 메디케어 파트 D와 같은 정도 이거나 더 우수한 보험이라는 뜻)이므로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장 그룹 보험이 종료된 후 2 개월

이내에 파트 D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파트 B에 대한 8개월 등록 기간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OBRA 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저희 cahealthadvocates.org 에 있는 “메디케어와 기타 다른 의료 보험”에 대한 상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2개월의 특별 등록 기간을 놓치면,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연간 선거 기간 중에 파트 D 일반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등록 하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양호한 보험”이 없고, 귀하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대한 등록을 연기한 각 달에 대해, 전국 평균 보험료에 대한 1%를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파트 D 혜택을 받고 있는 한, 파트 D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하는데, 이 보험료에 벌금이 가산됩니다.

보험 선택

메디케어 파트 B 그리고/또는 파트 D 에 대한 등록 연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 메디케어와 직장 GHP 또는 LGHP 모두 가입하기 (이 경우 직장 보험이 우선이며, 즉, 우선적으로 지불되며, 메디케어를 이차로, 즉, 이차적으로 지불되는 것을 말함); 또는
- 직장 보험을 거절하고 메디케어에 등록하여 다른 방법으로 메디케어를 보완하는 방법.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6-04-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메디케어와 직장 보험 모두 가입하기: 일차 및 이차 지불

만일 메디케어와 직장 GHP (20 명 이상 직원 업체) 또는 LGHP (100 명 이상 직원 업체) 모두 가입하기로 한다면, 직장 보험이 통상적으로 일차 보험이 되어 먼저 지불되며 메디케어가 이차 보험이 되어 이차적으로 지불됩니다. 메디케어가 이차적으로 지불될 때, 가능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찾는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경우에 따라 직장 보험과 공동으로 지불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서면 서류가 필요하며, 귀하나 병원측에서 그러한 금액을 메디케어 이차 지불 프로그램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 먼저, 이차 보험으로서의 추가 메디케어에 따른 매달 파트 B 보험료 \$96.40(2008년 기준)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의료보험 및 처방약 보험이 모두 되는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 혜택보다 더 좋은 것이라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이나 배우자(또는 가족의 일원) 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직장 보험이 더 이상 적용 되지 않을때까지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한 등록 연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등록을 연기하기로 하셨다면, 직장 보험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 시점에 파트 B와 파트 D에 등록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OBRA 에 자격이 되시는 분은, cahealthadvocates.org 에 있는 “메디케어와 기타 다른 의료 보험”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COBRA 에는 다른 규칙과, 의무 및 선택권이 적용됩니다.

직장 보증 그룹 의료 보험의 일반적인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직장 후원 그룹 의료 보험

만약 직장 GHP 또는 LGHP 가 행위별 수가제 플랜이라면, 비용 청구서가 제출된 뒤 어떤 보험이 지불되었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직장 보험과 메디케어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 보험이 의료 보험에 대해 먼저 지불한 다음 메디케어가 귀하의 청구를 수리할 것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병원에서 메디케어에 이차 혜택을 청구하면, 메디케어 통지서 (MSN)라고 불리는 명세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보상을 제때에 받으려면, 의사나 병원측에, 메디케어에게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적절한 서류를 구비한 청구서를 직장 보험 회사에 보내도록 요청하십시오. 메디케어는 직장 보험이 어떤 보험료를 지불했는지 알려진 후에 지불됩니다.

직장 후원 건강 유지 조직 (HMOs)과 지정 병원 체제 (PPOs)

만약 직장 보험 GHP 또는 LGHP 가 HMO 나 PPO일 경우, 메디케어가 지불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HMO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HMO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메디케어는 그 의료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6-04-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지 않습니다. HMO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HMO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메디케어는 그에 따른 서비스를 지불합니다.

PPO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는 메디케어가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주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만큼 보상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 네트워크 외에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사무국에 먼저 문의하여 얼마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보험의 탈퇴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직장 보험인 GHP 또는 LGHP를 탈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메디케어와 비슷한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GHP의 보험료가 비싼 경우 또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 플랜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직장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입니다.

퇴직 플랜 및 메디케어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직장 그룹 의료 보험 플랜 (GHP) 또는 대형 그룹 의료 보험 플랜 (LGHP)은 현재 직장인과 그 부양 가족에게만 해당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더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전직 근무자와 그 부양 가족에게 적용되는 퇴직 플랜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직장 and 단체의 경우에는 퇴직자, 그 배우자, 더 나아가 부양 가족에게 의료 보험과 더불어 퇴직 플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퇴직 플랜은 GHP 또는 LGHP 과는 달리, 메디케어가 지불한 다음에 지불합니다. 퇴직 플랜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직장에서 보험료와 공제액 및 공동 지불을 때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플랜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cahealthadvocates.org 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처한 특정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의료 보험 문의 상담 기관 프로그램 (HICAP) 에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HICAP 은 메디케어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며 귀하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의료 보험 선택권에 대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가까운 HICAP 사무소에 예약을 하시려면 **1-800-434-02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연락처 1-800-434-0222

06-04-08 © California Health Advocates: cahealthadvocates.org

본 개황보고서의 번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CDA),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및 연방 메디케어국(Federal Medicare Agency)에서 제공합니다.